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(보호자)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. 계약기간

장기요양 급여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범위로 한다.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급여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조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672,000원	1,486,800원	1,350,800원	1,244,900원	1,068,500원	597,600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.

②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이상	15,430 원	150분이상	44,770 원
60분이상	22,380 원	180분이상	50,400 원
90분이상	30,170 원	210분이상	56,170 원
120분이상	38,390 원	240분이상	61,950 원

③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78,58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0,85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4,240 원

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6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 하인 자에 관한 고시(해당자)	9%, 6%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
-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-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-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

2) 센터의 의무

-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-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
-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- ⑤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-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- ⑦ 기타 수급자 (또는 보호자)의 요청에 협조

3) 보호자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-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
-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
-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

5. 계약의 해지

1) 계약해지 요건

- ① 수급자 (또는 보호자)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▷ 계약이 만료된 경우
 - ▷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▷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동의 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
▷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▷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
▷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▷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▷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▷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2) 계약의 해지

① 수급자 (또는 보호자)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